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입학준비금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2.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지원대상(안 제4조)
- 지원금액(안 제5조)
- 환수(안 제7조)
- 다른기관의 협력(안 제8조)
- 부칙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교육아동청소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전화:3396-4665, FAX:3396-8632, 메일:sesusia@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단체복 및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가 구로 되어 있는 경우)이 되어 있는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 금액) ① 입학준비금의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원 대상자의 재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중복해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1학년도 입학 및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중구 교복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